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의2서식] <개정 2021. 6. 30.>

가정위탁보호 확인서

위탁아동	성 명		주민등록번호
	주 소		
	자택전화		
가정위탁 보호자	부	성명	생년월일
		주소	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)
	모	성명	생년월일
		주소	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)
위탁유형	[ ] 일반가정위탁 [ ] 전문가정위탁 [ ] 일시가정위탁		
가정위탁보호 결정일	년 월 일		
위탁아동과의 관계	[ ] 친인척 ([ ]친조부 [ ]친조모 [ ]외조부 [ ]외조모 [ ]조부모 외(관계: _____)) [ ] 친인척 외 * 친인척: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		
발급용도	(유효기간: 발행일부터 1개월) ※ 본 확인서는 지정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.		

위 아동은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297mm×210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